

<안전소식>

重大재해업체 入札참가 制限

勞働部, 내년부터 公共工事に...최장1년

설계서상工期 임의단축도 禁止

勞働部는 건설업체들의 災害豫防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災害多發업체에 대해서는 도급한도액을 감액조치하고 重大災害발생 업체는 1~12개월간 公共工事의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7일 勞働部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자율적인 災害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安全管理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 지도감독免除등 각종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災害多發업체에 대해서는 도급한도액 감액, 公共工事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不利益을 주기로 했다.

특히 大型업체의 災害를 줄이기 위해 100대 건설업체를 도급순위에 따라 1群(1~30위), 2群(31~70위), 3群(71~100)등으로 나눠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3~4개社에 대해서는 都合限度산출시 공사실적을 최고 3%까지 감액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도급순위 101위이하의 中小건설업체에 대해서는 同時 2명이상 사망 또는 연간 5명이상 사망재해발생등의 기준을 정해 重大災害발생정도에 따라 도급한도액을 감액토록 할 계획이다.

勞働部는 이와 함께 産業安全保健法 시행규칙을 개정, 重大災害발생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12개월동안 公共工事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다른 法令에 의해 公共工事입찰을 제한받은 재해발생 建設業體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2~4개월간 入

札참가를 추가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日刊建設 7月 8日字>

不實施工책임자 選別제제

건설부, 建協건의 回信서 밝혀

瑕疵보수기간 耐用年數감안 설정

安全診斷 비용 發注자가 부담

建設部는 시공회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不實工事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자만을 가려 제재 또는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요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내용연수등을 감안해 工程別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建設部는 13일 大韓建設協會가 최근 건의한 '정부의 건설공사부실 방지대책방안에 대한 의견'과 관련, 이같이 회신하고 건의내용은 建設業法등 관계법령개정때 충분히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建設部는 부실시공의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 지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建協의 건의에 대해 "시공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제재 또는 처벌토록 建設業法등 관련법령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建設部는 주요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연장과 관련, 하자보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民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工種別 하자보수기간은 해당시설물의 내용연수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建設部는 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뒤 실시하는 安全診斷과 관련, 安全診斷實施費用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전진단결과 시공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공자가 補修費 또는 改築費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日刊建設 7月 14日字〉

建設災害 반 이상이 墜落사고

産業安全工團, 상반기 現場재해조사

建設重大災害는 추락형태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韓國産業安全工團이 지난 상반기중 전국 建設現場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134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재해의 절반이상이 추락형태로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10~12시 사이에 전체의 25%가 발생,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建設重大災害의 발생형태는 墜落이 68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 절대적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냈는데 특히 엘리베이터피트 내부공사(11건)와 高層建物 도장공사(6건)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예년의 3배 수준에 이르는 등 급증추세를 보였다.

또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재해는 18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으며 感電등 전기사고가 13건(10%), 낙하, 비래 6건(4%), 협착 5건(4%) 등의 순이었다.

발생시간별로는 오전 10~12시 사이에 34건(25%)의 사망재해가 발생한데 이어 오후 4~6시 24건(18%), 오전 8~10시 21건(16%), 오후 2~4시 19건(14%)등으로 하루作業이 본격 시작되는 시간대와 마무리를 앞둔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日刊建設 8月 3日字〉

瑕疵補修책임기간 대폭 延長

共同住宅 主要構造部 10년으로

사업계획承認權者가 監理者 지정
하자발생 處罰규정도 크게 強化

〈건설부, 住促法개정안 立法예고〉

共同住宅 主要 構造部의 瑕疵補修責任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하자책임기간 내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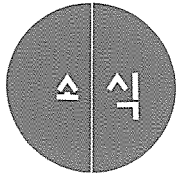
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施工者가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監理者를 지정하게 되며 監理者에게는 위법사항 시정명령권이 부여되는 등 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建設部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住宅建設促進法 改正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강화와 안전진단의 실시로 주택의 구조적 불안요인을 해소키 위해 현재 주요 構造部의 경우 3년간인 瑕疵補修責任期間을 사용검사일 이후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했으며 하자책임기간내에도 사용검사권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공 및 공사감리체계를 강화, 共同住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공자가 하고 있는 감리자 지정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하도록 하고 監理者에게는 위법사항 시정명령권을 부여키로 했다.

建設部는 이번 개정을 통해 10년 이내에 주요 構造部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나 설계·시공·감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



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日刊建設 8月 5日字)

1/4분기중 산업재해 작년동기대비 15.15% 감소

재해자 6,129명 줄고 산재보상금 지급액도 287억원 감소

금년도 재해감소목표관리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93년도 1/4분기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92년도 동기에 비해 전체 재해자수는 6,129명이 감소한 20,326명, 사망자는 80명이 감소한 45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재해율도 0.28%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15.15%가 감소되었으며, 사망률도 0.63%로 전년동기에 비해 5.9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상금지급액도 재해자수의 감소와 더불어 287억원이 감소하였다.

업종별 재해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기타산업과 임업·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산업이 감소하였고 재해율도 임업을 제외한 전 산업이 감소하였다.

사망자는 제조업(1명 증가)과 전기·가스·수도업(1명 증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하였고 특히 건설물량의 급증으로 우려됐던 건설업은 재해자 및 사망자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산재감소특별대책'의 추진과 함께 '천만명 서명운동 등 범국민 무재해운동'(6.2 현재 846만명 서명) 전개로 국민들의 안전보건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지방노동관서별·감독별 지역책임제 실시 등 산재취약요인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근로안전과의 설치 등 행정조직의 보강과 더불어 재해다발 건설현장별 책임제 실시, 신도시·지하철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관리 등 내실있는 지도효과가 컸으며, 검찰의 산재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실효를 거둔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산업재해를 우선하여 척결해야 한다는 노사의 자발적인 산재예방노력에도 힘입은 바 크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정보 6月 15日字)

ILO, 「중대산업사고 예방」 협약 및 권고 채택

제80차 ILO총회서 협약 제174호, 권고 제181호 2차 토의 거쳐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0차 ILO총회에서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대한 협약(제174호) 및 권고(제181호)가 채택돼 협약의 경우 비준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금번 협약채택으로 중대산업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주와 관계기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근로자 및 그 대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졌다.

협약 제174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자신의 관찰



하에 있는 모든 주요 위험시설에 대하여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설 시설물은 가동 전, 기존 시설물은 정해진 기간내에 위험시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물질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포함시킨 위험성에 관한 확인·분석 및 위험도, 설계·시공·화학물질의 선택·운전·유지보수 및 체계적 점검 등 기술적 조치 등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런가 하면 사업주는 주요 위험시설의 경우 안전보고서를 준비·제출·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사고 발생시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사고의 원인분석·사고영향 최소화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설명 등을 포함한 상세보고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정보를 참조하여 외부비상조치 계획 준비 및 주요 위험시설의 부지설정과 함께 적절한 기능과 기술적·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 후 본 협약에서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점검·평가·조사·지도, 그리고 관계법규에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및 그 대표의 경우는 주요 위험시설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안전보고서·비상계획 및 절차·사고보고서 준비시 참가해 협의할 권리가 있다.

반면 위험시설의 사고예방과 통제에 관련된 절차와 관행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면서 이러한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누출·화재 및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가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국민, 그리고 인근 환경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

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없애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인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관한 협약이 당연히 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보건정보 8월 1日字〉

무재해 1천만명 서명 목표달성

7월 31일 현재 범국민 무재해 천만명 서명운동에 1,008만명 참가

무재해 1천만명 서명목표가 달성되었다.

노동부는 오는 94년까지 재해율 1% 미만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7월부터 범국민 무재해 운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92년 8월 노사정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밝고 건강한 무재해일터 만들기 1천만명 서명」을 전개하기로 한 이래, 금년 7월 31일 현재 1천 8만 8천 1백 75명이 서명함으로써 1천만명 서명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서명자를 살펴보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6백65만여 명(66%)이고 그 이외에 학생, 근로자 가족, 신체장애자이며 주요 인사 들로는 김영삼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 등이 참여하였다.

그간 국내에서 유사한 서명운동이 많이 있었으나 1천만명 이상이 서명한 운동으로는 금번 무재해 서명운동이 처음 있는 일로 93년 6월 잠정집계에 의하면 재해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 2천 8백 61명, 사망자는 1백 24명이 감소하여 산재보험이 도입된 64년 이래 산재보상금 지급액이

소식

전년동기 대비 3백 32억원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무재해 참여사업장은 3만 4천 5백 39개소(6.30 현재)로써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5만 1천 개소의 67.7%에 해당하고 93년 상반기에 1천 1백 21개소 사업장이 무재해를 달성, 전년동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특히 노동부는 1천만명 서명목표의 달성 및 대폭적인 재해감소결과는 재무부, 건설부, 철도청 등 범정부적 지원의 결과라고 밝혔다.

재무부에서는 전체 재해의 35%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현장의 재해발생이 날로 심각한 점을 감안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재해다발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 11호)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개정중에 있다.

(안전보건정보 8월 15일자)

대한토목학회, 고급기술자대상 재교육실시

대한토목학회가 산업계에 종사하는 토목기술인을 대상으로 2기에 걸쳐 고급토목기술자 재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9월 21일부터 4주간 열리는 第1期 교육에 본 협회 교육부 洪鍾敏 전문위원이 안전관리과목을, 邊根周(연세대교수) 회원이 교량일반과 개설과목에 각각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의 활기를 하게 되었다.

학회에서는 특히 1期 교육에 주요토목구조물 뿐만 아니라 施工관리와 情報化 시공분야에 걸쳐 전문이론과 현장경험을 망라해 교육내용이 짜여져 있다고 밝혔다.

<협회소식>

임시이사회

參席：權五錫 회장 外 13人

場所：리베라호텔

日時：1993年 6月 29日 18時

案件：1. 협회정관 일부 개정 승인

2. 제4회 건설안전 세미나

3. 정관변경 승인을 위한 대의원 총회 일정 확정

임시총회

參席：협회 대의원

場所：협회 제2강의실

日時：1993年 7月 7日 15時

案件：협회정관 변경 승인에 따른 회의

第4回 建設安全 세미나 개최

本協會에서는 지난 7월 7日, 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建設業界, 學界, 각 有關기관, 연구소 등 建設業 相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第4回 建設安全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이날 발표되었던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大主題－建設災害豫防을 위한 실천방안>

· 제1주제－建設災害의 現況과 對策方向

발표자：權泰植(노동부 건설근로안전과장)

· 제2주제－日本 建設會社の 安全管理실정

발표자：우에다 다케시(日本 五洋建設(株) 안전부장)

· 제3주제－道路 터널의 換氣

발표자：趙元喆(공학박사, 연세대 교수) ⊙